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6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최혁진 · 강준현
김문수 · 이용선 · 황명선
허성무 · 남인순 · 민병덕
이수진 · 김우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·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,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.

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,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, 송·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·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) 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 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전(停電)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 및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벌목 및 전지(剪枝)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림 및 토지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·내용·기간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상황 또는 정전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

조치로서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동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3(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)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7조제1항 중 “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토지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을

“천재지변, 전시·사변,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) 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전(停電)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 및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벌목 및 전지(剪枝)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림 및 토지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해당</u>

<신 설>

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·내용·기간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상황 또는 정전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동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3(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)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

	<u>업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</u> ④ <u>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
제87조(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)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·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	제87조(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.

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, 전시·사변,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

---토지등을-----

-----.

② -----천재지변, 전시·사변,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-----

-----.

-----.

<삭 제>

<u>2.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</u> <u>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</u> <u>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</u> <u>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</u> <u>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</u> <u>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</u> <u>또는 제거</u> ③·④ (생 략)	<u><삭 제></u>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	---